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8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함(안 제4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 제목“(과태료)”를“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<u>과태료</u>) 시장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44조(<u>과태료 부과·징수 등</u>)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----- -----. ----- ----- <u>부과·징수 및 이</u> <u>의신청</u>----- -----.</p>